

##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3. 31  
다. 상정일자 : 2005. 4. 15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의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화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 전방조종자동차(가장앞부분과 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이내인자동차) : 소형일반버스 세율(65,000원) 적용
  - 이외의 자동차 :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경감(안 제14조의4)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 임 :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 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

## 2. 건축물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분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5

## 3. 주택

-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4. 선박

-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2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8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29조 제목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1항과 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 제1항 제1호의 표중 “1500씨씨이하”를 각각 “1600씨씨이하”로 한다.

제39조의2 제1항 중 “1,000분의175”를 “1,000분의215”로 한다.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4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5조 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6조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0조중 “1,000분의2”를 “1,000분의1.5”로 한다.

제91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92조제1항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비과세건축물”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과세건축물”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법 제234조의21”를 “법 제194조”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를 “재산세과세대장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구대조문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7. (생 략)</p> <p><u>8. 종합토지세</u></p> <p>③ (생 략)</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lt;삭제&gt;</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3조(과세대상 등) -----</p> <p>-----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p> <p>-----</p> <p>-----</p> <p>-----</p> <p>-----</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보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다.</p>
<p>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     가. 주택         &lt;과세표준&gt;                   &lt;세율&gt;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p>	<p>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lt;과세표준&gt;                   &lt;세율&gt;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 5</p>
<p>    나. 끌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         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p>	<p>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lt;과세표준&gt;                   &lt;세율&gt;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p>

<p>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u>그 가액의 1,000분의 6</u></p> <p>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u>그 가액의 1,000분의 3</u></p> <p><u>2. 선박</u></p> <p>가. 고급선박 <u>그 가액의 1,000분의 50</u></p> <p>나. 가목이외의 선박 <u>그 가액의 1,000분의 3</u></p> <p><u>3. 항공기</u></p> <p><u>그 가액의 1,000분의 3</u></p>	<p><u>10억원이하</u> <u>10억원초과</u></p> <p><u>10억원초과</u></p> <p><u>다. 분리과세대상</u></p> <p>(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p> <p><u>2. 건축물</u></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 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 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u>3. 주택</u></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border="0">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right: 20px;"><u>&lt;과세표준&gt;</u></td><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right: 20px;"><u>&lt;세율&gt;</u></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0만원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000분의 1.5</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tr> </table> <p><u>4. 선박</u></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u>&lt;과세표준&gt;</u>	<u>&lt;세율&gt;</u>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u>&lt;과세표준&gt;</u>	<u>&lt;세율&gt;</u>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생략)

<신설>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②(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세율 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31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부동산 -----)

①-----  
-----  
-----.

1. ----- 부동산

2. -----  
부동산

3. ----- 부동산

4. ----- 부동산

②-----  
부동산  
-----.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미하	18원	800㎤미하	80원
1,500㎤미하	18원	1,000~1,499㎤	100원
2,000㎤미하	19원	1,500~1,999㎤	140원
2,500㎤미하	19원	2,000~2,499㎤	200원
3,000㎤미하	24원	2,500~2,999㎤	220원

1의2. ~ 6. 생략

②(생략)

제39조의2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생략)

제52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  
<신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	-----	-----	-----
1,600㎤미하	-----	-----	-----
-----	-----	1,600~1,999㎤	-----
-----	-----	-----	-----
-----	-----	-----	-----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9조의2 ①-----  
----- 1,000분의 215--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납세의무자) ① ~ ④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

	<p>나하고 매도 · 판매 ·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p>
<p>제54조(세율) ① ~ ②(생략)  <u>&lt;신설&gt;</u></p>	<p>제54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p>
<p><u>제7절 종합토지세</u></p>	<p><u>제7절 종합토지세&lt;삭제&gt;</u></p>
<p>제70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p>	<p><u>&lt;삭제&gt;</u></p>
<p>제71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u>&lt;삭제&gt;</u></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p>	
<p>2.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p>	
<p>3.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p>	
<p>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p>	

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2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

#### <삭 제>

<p>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p> <p>3. 영 제194조의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p> <p>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p> <p>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p> <p>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0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p> <p>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p>
<p>제73조(세율) ①제7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lt;과세표준&gt; &lt;세율&gt;</p> <p>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p> <p>2천만원 초과 4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3</p> <p>5천만원 초과 13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억원 이하 1,000분의 5</p> <p>1억원 초과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억원 이하 1,000분의 7</p> <p>3억원 초과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10</p> <p>5억원 초과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만원 15</p> <p>10억원 초과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20</p> <p>30억원 초과 5,128만원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30</p> <p>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p>

&lt;삭 제&gt;

②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억원 이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300억원 이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3억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이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 제7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4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0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년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75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삭제>

<삭제>

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76조(부과·징수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장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7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8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군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1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삭 제>

<삭 제>

<삭 제>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상에 등재 할 수 있다.

(6)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 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 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8)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9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복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0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1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체 없

제8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4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의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 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② \_\_\_\_\_  
재산세과세대장 \_\_\_\_\_  
\_\_\_\_\_

**제8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_\_\_\_\_  
토지·건축물 및 주택 \_\_\_\_\_  
토지·건축물 및 주택 \_\_\_\_\_  
\_\_\_\_\_

② \_\_\_\_\_  
토지·건축물 및 주택 \_\_\_\_\_  
\_\_\_\_\_

**제88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제90조(세율) 1,000분의 1.5

제9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재산세  
 재산세

제92조(신고의무) ①

1. 건축물 및 주택
2. 건축물 및 주택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 --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 --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
5. 건축물 및 주택

나 총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생략)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건축물 및 주택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194조

④

법 제194조

재산세

제93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재산세과세대장에